공소청법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54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박은정ㆍ이해민ㆍ서왕진

신장식・조 국・김준형

김선민 · 강경숙 · 김재원

차규근 • 황운하 • 정춘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 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 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 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 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소청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소청) ① 검사(檢事)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 ② 공소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공소청을 두고,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지청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기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지방공소청을 두거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 ④ 공소청의 위치와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설치, 명칭과 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공소청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

현을 기한다.

- ②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다만,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에 관하여 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기속된다.
 -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4. 재판 집행 지휘 감독
 - 5.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
 - ②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공소청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공소청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공소청장, 지방공소청의

-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 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소청장, 지방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 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공소청

- 제8조(공소청장) ①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공소청장은 특정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 ② 공소청장은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한다.
 - ③ 공소청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 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⑤ 공소청장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 업무를 관장하며 공소청 소속 모든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공소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⑦ 공소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⑧ 이 법의 공소청장을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
- 제9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공소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무부차관
 - 2. 법원행정처차장

- 3. 대한변호사협회장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5.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6.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추천위원회는 공소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공소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차장) ① 공소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차장은 공소청장을 보좌하며, 공소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조(하부조직) ① 공소청의 하부조직은 부, 사무국으로 하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둔다.
 - ② 공소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장을 보좌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검사연 구관을 둔다. 이 경우 검사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되,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제12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무 중 심의의 대상이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소청장 소속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3조(위임규정) 공소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 제14조(지방공소청장) ①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둔다.
 - ② 지방공소청장은 그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 ②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각각 차장을 둔다.
 - ② 차장은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7조(직제)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렁으로 정한다.

제4장 검사

- 제18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0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제21조(검사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이하 "인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1. 검사 3명
 -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소청 인사 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소청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

-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 또는 면소, 공소기각 사건이 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은 제3조에서 정한 공소청과 검사의 소임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의 정도를 중심으로 설정하되, 성실성, 청렴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정원·보수 및 징계)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되, 검사의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검사적격심사) ① 검사(공소청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정년) 공소청장의 정년은 65세, 공소청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제27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제28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5장 공소청 직원

- 제29조(공소청 직원) 검사 아닌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소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6장 보칙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32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심의대상이 되어 불기소결정이 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면으로 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② 공소청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⑤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을 각각 폐지한다.
- 제3조(공소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공소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4조(검찰총장의 지위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총장은 이 법의 공소청장으로 보고, 그 임기는 검찰총장에 임명 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제5조(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각각이 법의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

- 제6조(검찰청의 조직 및 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의 공소청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중 인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 사기관으로 이관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관한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관련 수사기관으로 조직을 이관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의 고등검찰청의 사무는 그 성질에 따라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검찰청법」 제4조에"를 "「공소청법」 제4조에"로 한다.

제47조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②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을

"대검찰청"으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으로 규정된 것은 "공소청"으 로 본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규정된 것은 각각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본다.
 - ③ 다른 법령에서 "검찰총장", "검사"로 규정된 것은 각각 "공소청장", "공소청 소속 검사"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검찰청", "대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를 규정한 취지가 수사에 관한 것일 경우 수사의 대상에 따라 "중대범 죄수사청"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 "검사"는 "중대범죄 수사청 소속 수사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 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